

# 남양주시 슈퍼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138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3. 3. 8.

제안자 : 남양주시장

## 1. 제안이유

남양주시 슈퍼성장시대 실현을 위해 세대, 지역, 이념, 계층을 초월한  
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지역대표가 함께 참여하여 시민통합과  
소통기능이 강화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설치 및 기능(안 제2조)

- 다음 사항에 관한 자문, 의견수렴, 토론, 제안 등
  - 1) 시정 주요 시책 및 지역 주요 현안 과제에 관한 사항
  - 2) 시정혁신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
  - 3) 그 밖의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

나. 위원회 구성 및 임기(안 제3조 ~ 제4조)

- 위원장 포함하여 30명 이내 구성
- 임기 2년,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

다. 위원회 회의 운영(안 제7조)

- 정기회의(연2회), 임시회의
-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구성 가능

라. 위원회 지원 및 수당 등(안 제10조 ~ 제11조)

- 예산 범위 내 행정적 지원 및 수당 지급

마. 기타 유사 조례의 폐지(부칙 제2조)

- 「남양주시 3050전략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」 폐지

### 3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)

나. 입법예고

1) 예고기간: 2023. 2. 2. ~ 2023. 2. 15.(13일간)

2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다. 부서협의

1) 협의기간: 2023. 1. 25. ~ 2023. 1. 26.(2일간)

2) 협의결과

- 성별영향평가(여성아동과): 개선의견 반영

※ 개선의견 : 위원회 구성의 내용이 당연직까지 포함하여 참여

위원 성비를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개선을 권고함

해당 내용 (제·개정 법령안)	개선안 (법령 수정안)
제3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	제3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<u>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

- 부패영향평가(감사관): 원안동의

- 규제심사 대상 여부(법무담당관): 규제심사 대상 아님

## 남양주시 슈퍼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민통합과 소통의 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각계 각층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지역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남양주시 슈퍼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 및 기능)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, 의견수렴, 토론, 제안 등을 위하여 남양주시 슈퍼성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시정 주요 시책 및 지역 주요 현안과제에 관한 사항
2. 시정의 혁신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
3. 그 밖의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

제3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2.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
3.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는 기관·사회단체 임원 및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
4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중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사람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5. 제9조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

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회의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.

1.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위원장에게 개의 요구하는 경우

2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장은 회의 개의 5일 전까지 회의 일시,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8조(의견청취 등)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9조(비밀 준수 의무 등)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0조(행정지원 등) ①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할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.

제11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

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남양주시 3050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.

소관 관·과		기획예산과
입안자	관·과장 직위·성명	기획예산과장 이 장 호
	팀장 직위·성명	기획팀장 방 희 선
	담당자 성명·전화	송 정 연 (031-590-2058)



# 남 양 주 시



수신 기획예산과장

(경유)

제목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(2023-08)

기획예산과-1281(2023.1.25.)호와 관련하여 「남양주시 슈퍼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정(안)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■ 주요평가내용 :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관련 권고사항 반영 여부

■ 평가 결과 : **원안동의**

※ **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** 「남양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」 제10조 (재평가 절차)에 따라 **3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**할 수 있으며, 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칙 제11조(평가결과의 반영)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.

붙임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. 끝.

## 감 사 관

주무관 김주현 청렴윤리팀장 서연미 감사관 2023. 1. 26. 홍준기

협조자

시행 감사관-1182 (2023. 1. 26.) 접수 기획예산과-1369 (2023. 1. 26.)

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, (금곡동) / <http://www.nyj.go.kr>

전화번호 031-590-4719 팩스번호 031-590-1985 / [sjh99006@korea.kr](mailto:sjh99006@korea.kr) / 비공개(5)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

- 남양주시 슈퍼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나. 재정 수반 요인

- 제10조(행정지원 등) ①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11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2항 제1호

## 3. 미첨부 사유
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

## 4. 작성자

기획예산과장 이장호



# 남 양 주 시



수신 기획예산과장

(경유)

제목 규제심사대상 여부 확인 「남양주시 슈퍼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정

1. 기획예산과-1281(2023. 1. 25.)호와 관련입니다.
2. 「남양주시 슈퍼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정에 따른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,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10조 및 「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3조에 따라 규제 신설 및 강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(자문 등을 위한 행정기관 내부위원회 구성으로 위원회 결과에 따라 강제하거나 집행하기 위한 하위규정 없음)을 알려드립니다.

## 관련 법령

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10조(심사요청)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령안(法令案)에 대하여는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.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
2.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
3.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·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

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 대한 규제정비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. [전문 개정 2010. 1. 25.]

「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3조(예비심사)①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규제가 시민의 일상생활과 사회·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제14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(이하 “중요규제”라 한다)인지를 결정하고, 그 결과를 관계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끝.

## 법 무 담 당 관

주무관 **김상현**      적극행정팀장 **남상명**      법무담당관 **김진배**      2023. 1. 26.

협조자

시행 법무담당관-1165      (2023. 1. 26.)      접수 기획예산과-1365      (2023. 1. 26.)

우 12232     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, 남양주시청 법무담당관 (금곡동)      / <https://www.nyj.go.kr/>

전화번호 031-590-7312      팩스번호 031-590-2900      / [windyk@korea.kr](mailto:windyk@korea.kr)      / 비공개(5)



# 남 양 주 시



수신 기획예산과장

(경유)

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(2023A경기남양009개선의견) - 「남양주시  
슈퍼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(안)」

1. 기획예산과-1271(2023.1.25.)호와 관련입니다.
2. 귀 부서에서 제출한 「남양주시 슈퍼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(안)」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하오니, 그 반영계획서를 2023. 1. 30.(월)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- 제출방법 안내 -

※ 중앙기관 법령과제의 반영계획서 제출방법 (GIA 시스템)  
- 정부입법지원센터를 통해 반영계획서를 입력

### ※ 이외의 반영계획서 제출방법 (GIA 시스템)

1. 나의페이지 > 나의할일 > 성별영향평가대기 > 나의과제 - 검토의견통보서의 상태값인 [통보(개선)] 클릭
2. 검토의견통보서의 개선의견 내용을 확인 후 오른쪽 하단의 「반영계획서 작성」 단추를 클릭하여 반영 계획 및 결과 작성 후 저장
3. 저장 단추 오른쪽의 기안 단추를 클릭하여 체크리스트 (성별영향평가서) 기안 단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안 결재 진행

※ 시스템 사용 문의 : GIA시스템 콜센터 (T. 02-3789-4450)

붙임 검토의견 통보서 (2023A경기남양009) 1부. 끝.

## 남 양 주 시 장

주무관 **최민아** 여성정책팀장 **김일녀** 여성아동과장 **교육** 복지국장 **전결 2023. 1. 26.**  
**최재웅**

협조자

시행 여성아동과-2638 (2023. 1. 26.) 접수 기획예산과-1420 (2023. 1. 26.)

우 12009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95, 복지국 여성아동과 / <http://www.nyj.go.kr>

전화번호 031-590-4491 팩스번호 031-590-2269 / [wha4247@korea.kr](mailto:wha4247@korea.kr) / 비공개(5)

- 정약용의 도시 남양주 ! -

#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

관리번호	2023A경기남양009		
정책명	남양주시 슈퍼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(안)		
소관부서	기관명	경기도 남양주시	
	부서명	기획예산과	
	담당자명	송정연	전화번호 031-590-2058
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	2023년 1월 25일		
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(기획예산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제·개정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남양주시 슈퍼성장시대 실현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지역대표가 함께 참여하여 시민통합과 소통 기능이 강화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함.</li> </ul> </li> <li>■ 제·개정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위원회 구성 및 임기, 회의운영, 지원 등</li> </ul> </li> <li>■ 성별영향평가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✓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관련 조항, 표현 : 없음</li> <li>✓성별특성 반영 : 해당사항 없음</li> <li>✓성별 균형 참여 : 성별균형참여 명시하였으나 개선의견에 해당</li> <li>✓성별 통계 : 해당사항 없음</li> </ul> </li> </ul>		
종합 검토 의견 (성별영향평가책임관)	<input type="checkbox"/> 개선사항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체개선안 동의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개선의견		
	<p>○ 성별영향평가서 점검포인트 3-1과 관련한 개선의견으로, 제3조(위원회 구성) 1항 내용이 당연직까지 포함하여 참여 위원 성비를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개선을 권고함.</p> <p>○ 당연직(본 조례에선 시장 1명)의 성별은 균형참여 관리 대상이 아니기에 연 1회 여성가족부 정기 위원회 성별참여현황 조사 기준과 다르게 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음.</p> <p>○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,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(시정 참여)에 명시된 바와 같이 ‘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~위촉직 위원 수의’ 문구 추가 권고.</p>		
	구분	해당 내용 (제·개정 법령안)	개선안 (법령 수정안)
1	제3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	제3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<b>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</b>	검토사유  - 성별균형참여 조항 문구 수정 권고

	<p>참고법령</p> <p>※ 「양성평등기본법」</p> <p>제21조(정책결정참여)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※ 「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</p> <p>제10조(시정 참여)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구성·운영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
<p>검토의견 반영계획서</p>	<p>2023년 1월 30일 까지</p>
<p>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3년 01월 25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남양주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담당자/연락번호 : 최민아/031-590-4491)</p> <p>기획예산과장 귀하</p>	